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양식 제10호]

[様式第10号]

혼인신고서 婚姻届 (년 월 일) (年 月 日)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届出書は、裏面の作成方法を参考に記入し、選択項目には「○」をつけてください。									
구분 区分		남편(부) 夫になる人 (夫)					아내(처) 妻になる人 (妻)		
① 혼인당사자 (신고인) ① 婚姻 当事者 (届出人)	성명 氏名	한글 ハングル 한자 漢字	*(성) / (명) * 氏 / (名)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성) / (명) * 氏 / (名)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본(한자) 本貫 (漢字)		전화 電話 番号		본(한자) 本貫 (漢字)		전화 電話番号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 番号	-				-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소 *住所								
② 부모 (양부모) ② 父母 (養父母)	부 성명 父の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모 성명 母の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③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③外国の方式による婚姻成立日			년 월 일 年 月 日						

④성·본의 협의 ④氏・本貫の協議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子の氏・本貫を母の氏・本貫にすることに合意しましたか?		예 ☐ 아니요 ☐ はい ☐ いいえ ☐	
⑤근친혼 여부 ⑤近親婚かどうか		혼인 당사자들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해당됩니까? 婚姻当事者が8親等以内の血族に該当しますか?		예 ☐ 아니요 ☐ はい ☐ いいえ ☐	
⑥기타 사항 ⑥その他の事項					
⑦증인 ⑦証人	성명 氏名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주소 住所				
	성명 氏名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주소 住所				
⑧동의자 ⑧同意者	남편 夫	부 父	성명 氏名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후 견 인 後 見 人	성명 氏名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모 母	성명 氏名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아내 妻	부 父	성명 氏名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성명 氏名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모 母	성명 氏名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⑨신고인 출석 여부 ⑨届出人の出席有無		(1) 남편(부) (2) 아내(처) (1) 夫になる人 (夫) (2) 妻になる人 (妻)			
⑩제출인 ⑩提出人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他人の署名又は印章を盗用して虚偽の届出書を提出したり、虚偽の届出を行い、家族関係登録簿に事実と異なる内容を記載させた場合は、**刑法に基づき処罰**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米印(*)の資料**は国の統計作成のために統計庁でも収集している資料です。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 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下記の事項は「**統計法 第24条の2**に基づいて**統計庁で実施する人口動向調査**です。 「統計法」 第32条及び第33条に基づき誠実に回答する義務があり、個人の秘密事項は厳重に保護されますので事実を正確に記入してください。

인 구 동 향 조 사 人口動向調査					
㉗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イ. 結婚して実際に同居を始めた日		년 월 일부터 동거 年 月 日から同居			
⑭혼인 종류 □. 婚姻 의 종류	남편 夫	(1)초혼 (2)사별 후 재혼 (3)이혼 후 재혼 (1)初婚 (2)死別後再婚 (3)離婚後再婚	아내 妻	(1)초혼 (2)사별 후 재혼 (3)이혼 후 재혼 (1)初婚 (2)死別後再婚 (3)離婚後再婚	

㉔ 최종 졸업 학교 八. 最終 學歷	남편 (부) 夫	(1) 학력 없음 (2) 초등학교 (3) 중학교 (1) 學歷なし (2) 小学校 (3) 中学校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이상 (4) 高校 (5) 大学 (6) 大学院以上	아내 (처) 妻	(1) 학력 없음 (2) 초등학교 (3) 중학교 (1) 學歷なし (2) 小学校 (3) 中学校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이상 (4) 高校 (5) 大学 (6) 大学院以上
㉔ 직업 ㉔ 職業	남편 (부) 夫	(1) 관리직 (2) 전문직 (1) 管理職 (2) 専門職 (3) 사무직 (4) 서비스직 (3) 事務職 (4) サービス業 (5) 판매직 (6) 농림어업 (5) 販売職 (6) 農林漁業 (7) 기능직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7) 技能職 (8) 装置・機械操作及び組立関連 (9) 단순노무직 (10) 군인 (9) 単純労務職 (10) 軍人 (11) 학생·가사·무직 (11) 学生・家事・無職	아내 (처) 妻	(1) 관리직 (2) 전문직 (1) 管理職 (2) 専門職 (3) 사무직 (4) 서비스직 (3) 事務職 (4) サービス業 (5) 판매직 (6) 농림어업 (5) 販売職 (6) 農林漁業 (7) 기능직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7) 技能職 (8) 装置・機械操作及び組立関連 (9) 단순노무직 (10) 군인 (9) 単純労務職 (10) 軍人 (11) 학생·가사·무직 (11) 学生・家事・無職

※ 첨부서류 및 혼인 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添付書類及び婚姻当事者の国籍は国の統計作成のために統計庁でも収集している資料です。

작성방법 作成方法

※ 등록기준지: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登録基準地: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その国籍を記入してください。

※ 주민등록번호: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住民登録番号: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又は生年月日)を記入してください。

※ ①, ②란 및 ⑤, ⑦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 ④, ⑥, ⑧)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 欄①、②及び欄⑤、⑦は届出人全員が記入し、その他の欄(③、④、⑥、⑧)は該当者のみ記入してください。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

※ 住民登録転入届はこの家族関係登録届とは別途に行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②란: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欄②: 婚姻当事者が養子である場合、養父母の基本事項を記入してください。

③란: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欄③: 外国の方式による婚姻証書謄本の提出の場合、婚姻成立日を記入してください。

④란: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欄④: 「民法」第781条第1項の但し書きに基づき子の氏・本貫を母の氏・本貫にすることについて合意する場合は、その事実を記入してください。

⑤란: 혼인당사자들이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을 표시합니다.

欄⑤: 婚姻当事者が「民法」第809条第1項に基づく近親婚に該当しないという事実[8親等以内の血族(特別養子の養子縁組前の血族を含む)]を記入してください。

⑥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欄⑥: 下記の事項及び家族関係登録簿へ明確に記録するために、特に必要な事項を記入してください。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소제기자만 신고 가능)의 경우에는 재판부원 및 확정일자
- 事実上婚姻関係存在確認の裁判による婚姻届(両方の当事者が生存している場合に提訴者のみ届出が可能)の場合には裁判所及び確定日
-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 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
- 父母の婚姻によって嫡出子の身分を取得した子がいる場合はその子の氏名、登録基準地

⑦란: 증인은 성인자이어야 합니다.

欄⑦: 証人は成年者である必要があります。

⑧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欄⑧: 未成年者又は成年被後見人(2018年6月30日までは禁治産者を含む)が婚姻する場合に同意内容を記入してください。

⑩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欄⑩: 提出者(届出人が記入した届出書を届出人でない者が提出する場合のみ記載)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受付担当公務員は身分証明書との照合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下記の事項は「統計法」第24条の2に基づき統計庁で実施する人口動向調査です。

㉗란: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

欄イ: 結婚日とは関係なく実際に夫婦が結婚して同居を始めたときを記入します。

㉘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4)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欄ハ: 教育部長官が認める全ての正規教育機関を基準にして記入し、各学校における在学又は中退者は最終的に卒業した学校の当該番号に「○」をつけてください。<例> 大学3年在学中(中退) → (4) 高校に「○」をつける

㉙란: 결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欄ニ: 結婚する当時の主たる職業を基準に記入してください。

- (1) 관리자: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 (1) 管理者: 政府、企業、団体又はその内部の部署の政策と活動を企画、指揮及び調整(公共及び企業の役員等)
-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복지,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 (2) 専門家及び関連の従事者: 専門知識を活かした技術的業務(科学、医療、福祉、教育、宗教、法律、金融、芸術、スポーツ等)
- (3)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행정, 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 (3) 事務従事者: 管理者、専門家及び関連従事者を補助して業務を推進(行政、経営、保険、監査、相談、案内、統計等)
- (4) 서비스종사자: 공공안전, 신변보호, 돌봄, 의료보조,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 (4) サービス業従事者: 公共安全、身辺警護、介護、医療補助、美容、婚礼及び葬礼、運送、レジャー、調理に関連する業務
- (5) 판매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계산·정산 등
- (5) 販売従事者: 営業活動を通じて商品若しくはサービスの販売(インターネット、商店、公共場所等)、商品の広告、広報、計算、精算等
-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 (6) 農林・漁業の熟練従事者: 作物の栽培、収穫、動物の繁殖、飼育、山林の耕作・開発、水生動植物の繁殖及び養殖
-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 (7) 技能員及び関連の技能従事者: 鉱業、製造業、建設業において手と手工具を使用して機械設置及び整備、製品加工
-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산업용 기계·장비조작, 운송장비의 운전 등
- (8) 装置・機械操作及び組立関連の従事者: 機械を操作し製品の生産組立、産業用機械装置の操作、運送装置の運転等
- (9) 단순노무 종사자: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 (9) 単純労務の従事者: 簡単な手工をの使用し、単純かつ日常的で肉体的労力が求められる業務
- (10) 군인: 의무복무를 포함하여,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국방 분야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은 제외)
- (10) 軍人: 義務的兵役を含み、現在軍人の身分を維持している場合(国防分野に雇用されている民間人と予備軍は除く)
- (11) 학생·가사·무직: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 전업주부이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 (11) 学生・家事・無職: 教育機関に在学して学業に専念しているか、専業主婦若しくは決まった職業がない場合

첨부서류 添付書類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 以下の第1項は、家族関係登録官署にて情報システムでその内容が確認できる場合は添付を省略してください。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婚姻当事者の家族関係登録簿の基本証明書、婚姻関係証明書、家族関係証明書 各1通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6.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 단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2. 婚姻同意書[未成年者又は成年被後見人（2018年6月30日までは禁治産者を含む）が婚姻する場合、ただし届出書の同意欄に記入して署名又は捺印した場合は除く]及び成年被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成年被後見人の婚姻に成年被後見人が同意した場合のみ）
 3.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3. 事実上婚姻関係存在確認の裁判が確定して婚姻届を提出する場合、その裁判書の謄本と確定証明書各1部[調停、和解成立の場合調停（和解）調書及び送達証明書各1部]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4. 婚姻届特例法に基づく婚姻の場合、審判書の謄本及び確定証明書 1部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5. 事件本人が外国人の場合
 - 한국 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韓国の方式による婚姻の場合：外国人の婚姻成立要件必要証明書（中国人の場合未婚証明書）の元本及び国籍を証明する書面（旅券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 各1部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外国の方式による婚姻の場合：婚姻証書謄本1部及び国籍を証明する書面（旅券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 1部
 6.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1호 별지1 양식) 1부.
 6. 「民法」第781条第1項の但し書きに基づいて子の氏・本貫を母の氏・本貫にすることに合意した場合は、その協議事実を証明する婚姻当事者の協議書（家族関係登録例規第591号別紙1様式）1部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한]
 7. 身分を確認できるもの〔家族関係登録例規第600号に基づく〕
-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 ① 一般的な婚姻届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届出人全員の身分証明書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届出人が欠席し、提出者が出席した場合：提出者の身分証明書及び届出人全員の身分証明書又は署名公証又は印鑑証明書（届出人が本人の身分証明書なしに届出書に署名した場合は署名公証、届出書に印鑑を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郵送で提出する場合：届出人全員の署名公証又は印鑑証明書（届出書に署名した場合は署名公証、印鑑を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
-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② 報告的な婚姻届（証書謄本による婚姻届）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身分証明書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提出者が出席した場合：提出者の身分証明書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郵送で提出する場合：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届出人が成年被後見人の場合は、第7項の②の書類の他に成年被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添付してください。
-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소제기자)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事実上婚姻関係存在確認の裁判が確定して婚姻届を提出する場合は、出席した届出人（提訴者）の身分確認によって欠席した届出人の身分確認に代わることができます。